

『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1일

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1년 11월 8일

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·가정 폭력 관련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강화 등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·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(안 제4조)
-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함(안 제7조)
- 아동·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걸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아동·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·가정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추세에 따라 아동·여성을 위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-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
-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하고,
-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나,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